

의안번호	제 678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8월 21일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8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 의 자 : 윤은희, 김영주, 이양섭,
박우양, 박종규, 이광희,
임순묵

1. 제정이유

-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모유수유 및 무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나.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및 권장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 다. 영유아의 부모에게 임신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식, 정보 제공 및 교육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 라.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안 제7조)
- 마.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8.1.~7.)을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토록 규정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 42호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와 협의함.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
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 설치·지원사업
4.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모유수유실등 설치·운영)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의회 청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사
3.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신부 휴게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도지사는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제공 또는 교육 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제5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모유수유주간 등) 도지사는 해마다 8월1일부터 7일까지를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2조 관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표 소	판매 기	음료 대	개찰 구	승강 장	보안 감사 장	여객 탑승 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버스정류장	○	○									○	
철도 역사	○	○	○	○	○	○	○	○				○
도시철도 역 사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광역전철 역 사	○	○	○	○	○	○	○	○				○